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26-05659 민원 이행청구 등

피 청 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심 판 청 구 일 2026.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6. 3. 25. 청구인에게 한 검역조건 완화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즉시 이행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3. 6. 피청구인에게 폴란드산 축우용 조사료의 수입 검역조건 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5일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가축 전염병 국내유입 예방을 위해 검역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인 위험성을 이유로 검역조건 완화를 거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검역조건 완화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2023. 12. 20.자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을 통해 청구인에게 약속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민원답변서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11. 25.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0. 청구인에게 ‘향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 3. 6.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폴란드산 축우용 조사료의 수입 검역조건 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5일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예방을 위해 검역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라고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 이라 한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요구한 내용대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을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개정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 중 ‘청구인에게 약속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개정

을 즉시 이행하라' 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26. 6. 2.

중 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